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2018. 11. 12.~11. 23.

조 례 안 상 정

(조례 3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8-89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018-87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88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89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재기재 사항 삭제
- 나. 일반적인 위임조례 형식으로 목적규정 수정함(안 제1조)
-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 공표 범위, 공개 주기·시기·방법 등 명시(안 제2조)
- 라. 행정정보 공개대상 목록 정비(안 별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7. 19.~8. 0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컨설팅 전부반영함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거창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 공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보공개 대상목록

1. 정기공개

정 보	세부 업무	공개부서	공개주 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해당연도 업무계획	장기종합발전계획	기획예산 담당관	10년	수립·변경 시	인터넷 등
	주요 업무계획	기획예산 담당관	연1회	5월 중	“
예산, 결산, 기금 등 재정현황	예산서	기획예산 담당관	연1회	의회의결일부 터 1개월 이내	“
	지방재정 운용상황	기획예산 담당관	연2회	2월, 8월 중	“
	결산서	재무과	연1회	결산승인일부 터 5일 이내	“
	중기 지방재정계획	기획예산 담당관	연1회	11월 중	“
주요 업무평가와 추진상황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	기획예산 담당관	연1회	3월 중	“
	군정성과평가 결과	기획예산 담당관	연1회	6월 중	“
업무추진비	군수와 5급 이상 기관, 시책 업무추진비	해당 부서	월1회	매월	“
지방의회 질의, 답변,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사무과	연1회	감사종료일부 터 1개월 이내	“
거창군 부문별 주요 통계	인구통계	기획예산 담당관	월1회	매월	“
	지적통계	민원소통과	월1회	매월	“
	통계연보	기획예산 담당관	연1회	4월 중	“
부서별 주요 현황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지원현황	기획예산 담당관	연1회	1월 중	“
	거창군민대상 수상현황	행정과	연1회	9월 중	“
	민원처리실적	민원소통과	월1회	매월	“
	토지거래현황	민원소통과	월1회	매월	“
	결혼중개업소현황	행복나눔과	연1회	1월 중	“
	관광사업체현황	문화관광과	분기1회	1,4,7,10월 중	“

정 보	세부 업무	공개부서	공개주 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담배소매인 지정현황	경제교통과	월1회	매월	“
	주택보급률	도시건축과	분기1회	1,4,7,10월 중	“
	건축허가현황	도시건축과	분기1회	1,4,7,10월 중	“
	건축착공현황	도시건축과	분기1회	1,4,7,10월 중	“
	건축사용승인현황	도시건축과	분기1회	1,4,7,10월 중	“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다중이용 시설현황	환경과	분기1회	1,4,7,10월 중	“
	상수도 보급률	수도사업소	연1회	2월 중	“
	하수도 보급률	수도사업소	연1회	2월 중	“
	차량등록현황	민원소통과	월1회	매월	“
수질검사 결과	정수장 수질검사 결과	수도사업소	월1회	검사종료일부 터 1개월 이내	“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수도사업소	분기1회	1,4,7,10월 중	“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수도사업소	월1회	검사종료일부 터 1개월 이내	“

2. 수시공개

정 보	세부 업무	공개부서	공개 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예산, 결산, 기금 등 재정현황	추가경정예산서	기획예산 담당관	수시	의회의결일부터 1개월 이내	인터넷 등
사용료, 수수료,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쓰레기종량제봉투와 대형 폐기물 스티커 가격조정	환경과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
	제증명 등 수수료 조정계획	재무과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
	상수도 사용료 조정계획	수도사업소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
	하수도 사용료 조정계획	수도사업소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
민원처리업무 관련 업무편람	민원업무편람	민원소통과	수시	편람제작일부터 1개월 이내	“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결정사항	도시건축과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사항	도시건축과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
	도시계획 시설 결정사항	도시건축과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	도시건축과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
법규위반 업소	식품위생 관련 법규위반 업소 위반내용, 조치 결과	민원소통과	수시	수시	“
	대기, 수질 등 환경관련 법규 위반 업소 위반내용, 조치 결과	환경과	수시	수시	“
부서별 주요 현황	인사발령사항	행정과	수시	수시	“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현황 등 계약정보	재무과	수시	수시	“
	노인의료복지시설현황	행복나눔과	수시	수시	“
	노인요양병원현황	보건소	수시	수시	“
	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	행복나눔과	수시	수시	“
	지역아동센터현황	행복나눔과	수시	수시	“
	아동그룹홈현황	행복나눔과	수시	수시	“
	장난감은행	행복나눔과	수시	수시	“
	청소년시설현황	인구교육과	수시	수시	“

정 보	세부 업무	공개부서	공개 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보육시설 설치안내	행복나눔과	수시	수시	“
	보육시설현황	행복나눔과	수시	수시	“
	등산로현황	산림과	수시	수시	“
	병원·종합병원 현황	보건소	수시	수시	“
	의원현황	보건소	수시	수시	“
	한의원현황	보건소	수시	수시	“
	치과현황	보건소	수시	수시	“
	약국현황	보건소	수시	수시	“
	의료기기업소현황	보건소	수시	수시	“
	안경업소현황	보건소	수시	수시	“
	야간·공휴일 진료기관	보건소	수시	수시	“
	안마시술소, 안마원 현황	보건소	수시	수시	“
	소독업체현황	보건소	수시	수시	“
	식품위생업소현황	민원소통과	수시	수시	“
	공중위생업소현황	민원소통과	수시	수시	“
	약수터현황	수도사업소	수시	수시	“
지방의회 질의, 답변,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원별 질문답변	의회사무과	수시	수시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87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경제침체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비용 지원에 대한 대출금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영안정자금 이자비용 지원에 대한 대출금 범위 확대(안 제5조)
2천만원 이내 ⇒ 5천만원 이내
- 나. ‘착한가게’ 를 ‘착한가격업소’로 명칭 변경(안 제6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명칭변경사항 반영
-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9. 28.~10.18.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를 “조례는”으로 하고 “창업 및 경영자금”을 “창업과 경영자금”으로 “이자”를 “이자비용”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를”을 “소상공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은행 및 개별”을 “은행과 개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자보전"이라 한다)””을 ““이자지원””으로 “예산의”를 “예산”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지원 및 제외 대상)”을 “(지원·제외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중 “증·개축”을 “증축·개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와 같은 조 제3항 중 “이자보전금을 지원”을 “이자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관내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보전금”을 “이자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

제6조 제목 “(착한가게 특례 지원)”을 “(착한가격업소 특례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로 “예산의”를 “예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개·보수사업비”를 “개수·보수사업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를 “이자지원을 받고자”로 한다.

제8조 제목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자”를 “이자지원을 하고자”로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를 “이자비용을 지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과의”를 “금융기관과”로 “따른다.”를 “따라 군수가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역 및”을 “내역과”로 한다.

제9조 제목 “(지원중지 및 환수)”를 “(지원 중지·환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차보전을 지원받은”을 “이자지원을 받은”으로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 및 환수”를 “이자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휴·폐업”을 “휴업·폐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라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u>창업 및 경영자금</u> 대출금에 대한 <u>이자</u>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u>자</u>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u>은행 및 개별</u> 법률에서 규정한 금고나 조합 등을 말한다. 3. “<u>이자차액 보전</u>(이하 “<u>이차보전</u>”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이하 “<u>군</u>”이라 한다)이 <u>예산</u>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 및 제외 대상) ① 군수는 <u>소상공인</u> 육성을 위하여 관내의 <u>소상공인</u>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u>이차보전금</u>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가게 <u>증·개축</u>,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3. 소상공인이 <u>이차보전금</u>을 지원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신용보증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u>창업과 경영자금</u> 대출금에 대한 <u>이자비용</u>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u>소상공인</u>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u>은행과 개별</u> 법률에서 규정한 금고나 조합 등을 말한다. 3. “<u>이자지원</u>”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이하 “<u>군</u>”이라 한다)이 <u>예산</u>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제외 대상) ① 군수는 관내 <u>소상공인</u>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u>비용</u>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가게 <u>증축·개축</u>,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3. 소상공인이 <u>이자지원</u>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신용보증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

인 자. 다만, 증·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음

2.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

③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사치·향락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은 제1항의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이차보전금 등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2. 경영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3. 신용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착한가게 특례 지원) 군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연 3.0퍼센트 이내 이자
2. 쓰레기봉투, 시설 개·보수사업비 등

제7조(지원 절차) ①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확인 과정을 거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8조(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① 군수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인 자. 다만, 증축·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음

2.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

③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사치·향락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은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이자지원 등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2. 경영안정자금은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3. 신용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

②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특례 지원)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연 3.0퍼센트 이내 이자
2. 쓰레기봉투, 시설 개수·보수 사업비 등

제7조(지원 절차) ① 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확인 과정을 거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8조(금융기관과 업무협약) ① 군수는 이자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③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지원 내역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장을 휴·폐업하거나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용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3. 용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4.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지원 내역과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중지·환수) 이차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지원을 중지 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장을 휴업·폐업하거나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용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3. 용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4.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88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지방의회 동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절차를 마련하여 공유재산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위임된 의회동의 절차를 신설함(안 제12조제4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다.

나. 법제처 알기 쉬운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1.~10. 2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3조에 따라 거창군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와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 등 지역에너지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자립도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제사회구조로의”를 “경제사회구조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생산 및”을 “생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자료의 공개 및”을 “자료 공개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국가 및”을 “국가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 및”을 “제8조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설정 및”을 “설정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건물 및”을 “공공건

물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용·보급 및”을 “이용·보급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경차 및”을 “경차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신축·증축 및”을 “신축·증축과”로 “설비 및”을 “설비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감리자 및”을 “감리자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도시 및”을 “도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화 및 도심으로의”를 “강화와 도심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활성화 및”을 “활성화와”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 행위에 대하여”를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주 등”을 “건축물 소유자 등”으로 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설치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 가.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증축·개축·용도변경·대수선
 - 나. 창호·단열재·설비교체 등의 수선
3. 전기·조명시스템 등을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을 말한다)으로 변경
4. 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폐열회수설비 설치
5. 고효율 인버터·송풍기·전동기 등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설치
6. 고효율 보일러·냉난방기 등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 설치
7. 고효율 변압기 설치 등 수변전 설비 개선

제14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 등 에너지자립도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임근거 법령만 명시하여 문장정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3조에 따라 거창군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와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 등 지역에너지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자립도시 기반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패시브 하우스”란 단열이 매우 잘되어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연간 난방 요구량이 매우 낮은 건축물을 말한다. 2. “액티브 하우스”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하는 수동적(passive)인 패시브 하우스에 대비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하여 능동적(active)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제로에너지 하우스”란 패시브 요소기술 및 액티브 요소기술을 반영하여 자급자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3조(기본방향) 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에너지관련 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u>경제사회구조로</u>의 전환 2.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3. 지속가능하고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u>생산 및</u> 사용 확대	제3조(기본방향)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에너지관련 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u>경제사회구조로</u> 전환 2.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3. 지속가능하고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u>생산과</u> 사용 확대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군민의 협력 유도
6. 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군민의 적극적 참여 보장
7.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4조(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계획(이하 “에너지자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10년 이상의 계획 기간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1.~8. (생략)
- ②~⑤ (생략)

제9조(위원의 수당)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분야별 에너지 시책)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분야별 에너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및 관리
2. 공공건물 및 산하기관의 고효율에너지 제품, 환경표시 인증제품의 사용
3.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및 녹색건축물 확대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5.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진단

③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건축물을 신축·증축 및 개축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설비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시공 권장
2.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 등에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군민의 협력 유도
6. 에너지 관련 자료 공개와 군민의 적극적 참여 보장
7.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4조(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계획 수립)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계획(이하 “에너지자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10년 이상의 계획 기간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1.~8. (현행과 같음)
- ②~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분야별 에너지 시책)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분야별 에너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과 관리
2. 공공건물과 산하기관의 고효율에너지 제품, 환경표시 인증제품의 사용
3.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과 녹색건축물 확대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5.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진단

③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건축물을 신축·증축과 개축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설비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시공 권장
2.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 등에

게 친환경건축물 인증 권장

3. 공사 감리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게 녹색건축물에 대한 교육 실시, 녹색건축물 관련 업무지침 발간·배포

④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도시 및 교통, 각종 건설 계획 등이 교통수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

2. 주차 수요관리 강화 및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 억제

3.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 체계 마련

4.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제1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①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③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요율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녹색건축물 보급·지원)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적용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

게 친환경건축물 인증 권장

3. 공사 감리자와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게 녹색건축물에 대한 교육 실시, 녹색건축물 관련 업무지침 발간·배포

④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도시, 교통, 각종 건설 계획 등이 교통수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

2. 주차 수요관리 강화와 도심으로 차량 진입 억제

3.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 체계 마련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제1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①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③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다.

제13조(녹색건축물 보급·지원)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적용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

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으로 다음 각 호 행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등 설치(신축인 경우 포함)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증축·개축·용도변경·대수선·수선(창호·단열재·설비교체 등)
 3. 전기·조명시스템 등으로 변경(대기 전력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
 4.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
 5.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전동기 등) 설치
 6. 냉·난방 효율 향상 공사(고효율보일러, 냉·난방기기 등)
 7.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8.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 등에게 소요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공기업,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①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및 신규 주택을 녹색건축물

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설치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증축·개축·용도변경·대수선
나. 창호·단열재·설비교체 등의 수선
 3. 전기·조명시스템 등을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을 말한다)으로 변경
 4. 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폐열회수 설비 설치
 5. 고효율 인버터·송풍기·전동기 등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설치
 6. 고효율 보일러·냉난방기 등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 설치
 7. 고효율 변압기 설치 등 수변전 설비 개선
 8.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소요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공기업,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①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

(패시브하우스, 액티브하우스, 제로 에너지 하우스, 생태건축물 단지 등)로 전환하거나 조성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② (생 략)	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현행과 같음)
---	---